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9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, 방역수칙 미준수등을 위한 단속활동을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,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불명확으로 그간 지속적인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유권해석결과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되어 본 조례에 단속업무를 규정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함.
- 나. 청원경찰 직무범위 관련 「청원경찰법」 및 조례의 상충에 따라,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, 조례의 청원경찰 단속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“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,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”를 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.”로 개정함(안 제19조제1항).
- 나.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“공무원이나 청원경찰”을 “공무원”으로 개정함(안 제19조제3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원경찰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9. 9.~9. 29.)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전단 중 “공무원이나 청원경찰,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는”을 “공무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공무원이나 청원경찰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 용 추 계 서 미 첩 부 사 유 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경찰청 유권해석 결과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청원경찰의 단속 조항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도의 세입 감소 또는 세출 지출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임

4. 작성자

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정언룡(02-3780-0812)